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송동·식유촌 및 천주교 12지구 성당 제외 요청에 관한 청원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백운철 (스테파노 신부) 외 9,518명의 서울시민이 청원하고 본의원이 소개하는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송동·식유촌 마을 등 존치 및 재산권 보호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본 청원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024년 11월 5일, 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대 $2,211,333\text{m}^2$ 를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에는 최소 500년 이상 대대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온 송동 마을, 식유촌 마을과 천주교 12지구 성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많은 주민 및 신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전면 수용 및 철거를 전제로 강행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뮤여 재산권 제약을 감수해왔으며, 이제는 삶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뽑힐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이는 주민의 주거권 및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이어 삶의 터전 전체를 강제 수용하는 모순적인 처사입니다. 특히,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발표되고 사후적으로 형식적인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주민 참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또한, 청원 지역은 전체 사업 면적의 일부이며 지구 외곽에 위치하여 이곳을 제척하더라도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중대한 지장이 없는 반면, 사업 강행 시 주민들은 수백 년간 이어온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완전히 상실하여 회복 불가능한 사익 침해를 입게 됩니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행정청의 재

량권 일탈 · 남용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 나아가, 청원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 녹지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맹꽁이 서식지가 확인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며, 500년 역사의 마을 공동체라는 역사·문화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영구히 지켜야 할 더 큰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이에 청원인들은 「공공주택 특별법」 상 기존 건축물 등의 존치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고 있는 송동·식유촌 마을과 성당을 강제수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존치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청원인들의 바람이 받아들여지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